

검 토 보 고 서

2022. 9. 23. (금)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감사담당관 소관】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안 건 명

-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22년 9월 5일(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22년 9월 13일(화)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지방자치법」 제144조 (예비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검토보고]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I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감사담당관	-	630,510	630,510	0	100%

※ 징수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나.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감사담당관	161,752,000	118,026,220	0	0	43,725,780	72.97%

※ 집행률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집행잔액	집행잔액원인별 금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감사담당관	43,725,780	0	2,902,000	0	0	40,823,780	0

라. 집행률 저조 사업 현황

【집행률(지출액/예산현액) 70% 미만 기준, 단위 : 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감사 담당 관 (6 건)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8,570,000	4,080,300	0	0	4,489,700	47.61%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8,699,000	6,002,280	0	0	2,696,720	69%
	고객만족 행정	9,650,000	6,646,530	0	0	3,003,470	68.88%
	공익신고 운영	4,725,000	1,713,500	0	0	3,011,500	36.26%
	갈등관리 운영	7,190,000	2,321,300	0	0	4,868,700	32.29%
	기본경비	54,942,000	37,486,620	0	0	17,455,380	68.23%

마.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원)

부서	세부사업	전용금액	사유
감사담당관	투명하고 신뢰 받는 구정 운영 (기타보상금)	13,000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을 위한 예산전용

II 검토의견

1.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63만 510원으로 징수율은 100%임.
-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6,175만 2,000원이며, 지출액 1억 1,802만 6,220원으로 집행률은 72.97%임.

- 집행잔액은 4,372만 5,780원이며, 집행잔액원인별 금액은 예산절감액 290만 2,000원, 지출잔액 4,082만 3,780원임.
- 집행률 저조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70% 미만인 사업으로 집행률이 47.61%인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등 총 6건임.
-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을 위해 1만 3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음.

2. 검토의견

- 검토의견으로는
 2021년 감사담당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1개 정책사업 목표와 부조리예방을 위한 행정감사 실시 1개 단위사업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결과 성과지표 100%를 달성하였으나,
 갈등관리 운영사업은 2019년 신규 편성된 이후 계속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도 같은 사업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결산승인은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올바르게 적정하게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연

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임.

- 일반적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단계보다 다소 소홀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¹⁾에 따른 재정수지균형의 적정성, ‘예산 한정성의 원칙’²⁾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³⁾에 따른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 명시·사고이월, 예비비 사용, 예산의 초과지출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
- 결산검사 의견서에 모든 부서가 물품 구매시 계약서 작성 및 가격비교, 상품권 사용 관련 점검이 필요하다고 개선 및 권고하였고, 수의계약의 경우 경쟁입찰방식과 비교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적시에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체결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부족하고 원가 절감 및 품질혁신의 유인이 낮아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감사담당관은 수의계약금액 및 건수 증가를 억제하고 특정업체에 대하여 편중되는 계약이 되지 않도록 계약의 비교·심사 책임 부서로서 계약 세부내용의 비교 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1)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간의 상호융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하는 개념.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게 됨.**

3)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예외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이 있음.

사료됨.

-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을 통해 증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심의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